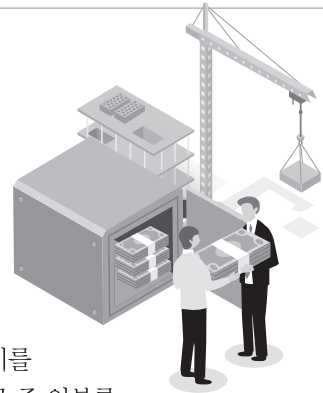


선급금 공동관리 제도



1. 도입 배경

- 2009년도부터 정부의 경기부양 시책에 의해 조합원의 선급금 수령이 증가하였고, 그에 따라 보증사고 증가
- 이에 따라 보증지급금에 대한 부실증가가 예상됨으로 이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수령한 선급금 중 일부를 질권 설정 등에 의하여 공동관리하는 방안 시행(2010. 8. 16)

2. 공동관리 대상금액

- 신용등급별 기준금액(선급금액) 이상시

신용등급	기준금액	
	공공	민간
AAA	면제	면제
AA	면제	면제
A	15억원 이상	10억원 이상
BBB	10억원 이상	7억원 이상
BB ~ B	7억원 이상	5억원 이상
CCC	2억원 이상	2억원 이상
CC ~ C	2억원 이상	2억원 이상

- ※ 계약금액 대비 선급금 지급률이 10% 이하인 경우 공동관리 대상 제외
- ※ 공공공사는 원도급공사의 경우에만 적용(하도급공사는 민간에 해당)

- 공동관리 금액 결정(선급금 수령률별 차등적용)

선급금 수령비율	신용등급별		A		BBB~B		CCC~C	
	공공	민간	공공	민간	공공	민간	공공	민간
10%초과 ~ 30%미만	10%	20%	20%	30%	40%	40%	40%	40%
30%이상 ~ 40%미만	15%	25%	25%	35%	45%	45%	45%	45%
40%이상 ~ 50%미만	20%	30%	30%	40%	50%	50%	50%	50%
50%이상 ~ 60%미만	25%	35%	35%	45%	55%	55%	55%	55%
60%이상	30%	40%	40%	50%	60%	60%	60%	60%

3. 선급금 공동관리 방법

- 현금담보 ⇒ 현금예치
- 조합원 정기에금통장 ⇒ 정기에금통장 질권설정
- 부동산 등 ⇒ 근저당권 설정 등
- 조합 할인대상어음 수령시 ⇒ 조합 어음수탁통장에 수탁

【담보제공이 제한되는 어음】

- 건설자재대금의 전도를 위하여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
- 타 공사의 선급금으로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
- 만기일이 담보제공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어음

4. 공동관리 선급금액의 반환기준

기 성 른	반환금액
20% 이상	공동관리 금액의 50%
50% 이상	잔액 전액

5. 보증수수료 정산

- 정산시기 : 담보물 반환시
- 정산방법 : 공동관리금액에 대하여 담보종류별로 정산
 - 현금담보 : 담보기간에 대한 수수료 반환
 - 예금·부동산 등의 담보 : 담보기간에 대한 AAA등급 수수료 적용

규정개정 안내

1. 대상규정 : 보증규정시행세칙

2. 주요내용

- 보증채권자가 공공기관인 공사의 보증수수료 추징과 관련하여 대상을 계약보증에서 전체보증(공사이행보증)으로 변경함

3. 변경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개정사유
제78조(책임 및 권한)㉠(생략) 1. (생략) 2. 제101조에 의하여 발급된 계약보증 해제시에 계약이행기일을 경과하여 실제 이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당초 수수료 기산일부터 실제이행일까지의 수수료를 계산한 뒤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추징한다. 3~4.(생략) ②(생략)	제78조(책임 및 권한)㉠(현행과같음) 1. (현행과같음) 2. 제101조에 의하여 발급된 보증 해제시에 계약이행기일을 경과하여 실제 이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당초 수수료 기산일부터 실제이행일까지의 수수료를 계산한 뒤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추징한다. 3~4.(현행과같음) ②(현행과같음)	대상을 전체보증으로 확대

4. 시행일 : 2017.2.27. 